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일반경쟁방식의 계약체결 대상 확대〉
■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344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일반경쟁방식의 계약체결 대상 확대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광희의원 등 19인
2. 제안연월일 : 2025. 12. 17.
3. 회부연월일 : 2025. 1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의 경우 그 성질에 따라 계약 대상이 아닌 자금 관리의 일환으로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 출자·출연기관에서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보험상품 등을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자금 운용의 절차상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자·출연기관이 사업 수행 목적 외의 자금 운용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일반경쟁 방식을 적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일반경쟁방식의 계약체결 대상 확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일반경쟁방식으로 체결해야 하는 계약에 ‘사업 수행 목적 외의 자금 운용을 위한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 ② (생 략) ③ 출자·출연 기관이 <u>계약을</u>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제17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계약(사업 수행 목적 외의 자금 운용을 위한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포함한다)</u> ----- ----- -----, --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 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일반경쟁 방식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계약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등이 가능함. 그러나, 사업 수행이 아닌 출연기관의 기본재산에 관한 계약체결의 경우 별도의 입찰을 거치지 않고 보험계약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 절차상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일반경쟁을 거쳐야 하는 계약을 ‘사업 수행 목적 외의 자금 운용을 위한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계약체결방식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보험상품을 수의계약으로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다만, ‘사업 수행 목적 외의 자금 운용을 위한 계약’의 범위가 모호하므로, 「민법」 제43조¹⁾의 자산의 운용에 관한 계약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²⁾의 기본재산의 운용에 관한 계약으로서 대통령령

1) 「민법」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재산)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

으로 정하는 계약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7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 ② (생략)	제17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출자·출연 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 -계약(사업 수행 목적 외의 자금 운용을 위한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포함한다)----- ----- ----- -----. ----- ----- ----- ----- -----.	③ ----- <u>계약(「민법」 제43조의 자산의 운용에 관한 계약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기본재산의 운용에 관한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포함한다)</u> ----- ----- ----- -----. ----- ----- ----- -----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수정의견은 「민법」상 재단법인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기본재산 운용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은 법적 형태가 「상법」상 주식회사이므로, 「민법」상 재단법인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반경쟁계약 방식의 적용을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까지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보험계약을 일반경쟁방식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근거는 동법 제17조제3항 본문이 아니라 단서(예외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또는 행정안전부의 수정의견)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법 문언 해석상 여전히 기본재산에 관한 보험계약 등을 동법 제17조제3항 단서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본재산을 활용한 보험상품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에는 일반경쟁방식을 거치지 않는 것을 허용하고자 한다면, 개정안(또는 행정안전부 수정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나, 절대적으로 기본재산을 활용한 보험상품 등의 계약에 일반경쟁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동법 제17조제3항 단서의 예외조항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식³⁾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333

3) ① 동법 제17조제3항 단서의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인정하거나, ② 동법 제17조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본재산의 운용에 관한 계약은 일반경쟁방식만을 허용하는 방안 등